

# 비대면진료의 법제도적 개선방향

---

유지현 변호사

## 강연자 소개 - 유지현 변호사



### 학력

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졸업(2003)

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(2007)

University of California, Berkeley, School of Law -LL.M. (2017)

### 경력

의사면허취득 (2003)

서울아산병원 인턴 (2003-2004)

사법연수원 40기 수료 (2011)

대한변호사회 (2011)

미국 New York주 변호사 (2018)

법무법인 (유) 광장 (2011-2021)

SK 바이오사이언스 (주) (2021 - 현재)

# COVID-19 이후 비대면진료

---

# COVID-19로 인한 비대면진료의 한시적 허용

---

- 2020. 2. 24. 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(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) 허용
- 허용 취지 :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
-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화상담, 처방을 실시
- 수가
  - ✓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(야간, 공휴, 심야, 토요일, 소아 등 별도 가산 가능)
  - ✓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전화상담관리료(의원급 의료기관) 별도 산정 가능

# 감염병예방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허용

##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(의료인,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진료)

-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(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**심각 단계**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,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의료법」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·무선·화상통신,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, 진단,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.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,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2. 15.]

# 현행 의료법 상 허용 여부

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 허용	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만 허용
<p><b>의료법 제33조(개설)</b></p> <p>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<b>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</b>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<b>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</b>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</li> <li>2.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</li> <li>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</li> <li>4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</li> <li>5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/ol>	<p><b>의료법 제34조(원격의료)</b></p> <p>① <b>의료인(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만 해당한다)</b>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·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<b>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</b>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(이하 "원격의료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</p>

# 최근 의료법 개정안

	강병원 의원안	최혜영 의원안
대상 의료기관	의원급 의료기관(대형병원 불가)	의원급 의료기관(대형병원 불가,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)
대상 환자	고혈압, 당뇨, 부정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질환 환자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섬, 벽지 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</li> <li>•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, 현역 복무 중인 군인</li> <li>• 대리수령자에 의한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</li> <li>• 고혈압, 당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, 수술/치료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육상 관찰, 중증/희귀난치질환 환자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(재진환자만 가능)</li> </ul>
진료 방법	관찰, 상담 등 원격모니터링만 가능	제한 없음

# 법 제도적 개선방향

---



# 원격의료 입법론

---

- 법률 상 명시적 허용
- 법률 상 명시적 허용은 없으나,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
  - ✓ 고시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(일본)
  - ✓ Telemedicine is medicine 접근법(네덜란드,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, 핀란드)
- 한국법
  - ✓ 의료법상 제한적 허용(의료인간 원격의료)
  - ✓ 감염병예방법 상 허용
  - ✓ 평상시 환자-의료간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?
    - 대상기관
    - 대상환자(초진 vs. 재진), 대상질병
    - 법률 vs. 보건복지부령

# 수가 관련 문제

---

## ■ 수가 인정 범위

- ✓ COVID-19 에서와 같이 일률적으로 수가 인정해 주는 방안
  - 진료행위별 수가 차등?
- ✓ 허용되는 원격의료 중 일부에만 수가를 인정해 주는 방안
  - 비급여진료행위?

## ■ 수가 인정 수준

- ✓ 대면진료보다 높은 수준(원격진료를 위한 장비/플랫폼에 대한 비용 보상)
- ✓ 대면진료와 같거나 낮은 수준(대면진료를 권장하는 방안)
- ✓ 실제 진료에 투입되는 원가, 인건비, 난이도, 노력 등을 고려

# 설명의무

- 원격의료의 장단점 및 한계에 대한 설명의무

- ✓ 원격医료를 제안하는 주체: 환자 또는 의료인

- 법률상 의무 vs. 개별 사안에서 판단

**[참고 법령] 의료법 제24조의 2(의료행위에 관한 설명)**

①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, 수혈, 전신마취(이하 이 조에서 "수술등"이라 한다)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(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설명하고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
2. 수술등의 필요성, 방법 및 내용
3.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
4.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
5.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
# 의료과실책임 문제

## [참고 법령] 의료법 제34조(원격의료)

-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(이하 "원격지의사"라 한다)는 **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**을 진다.
-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(이하 "현지의사"라 한다)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.

- **통상적인 진료행위와 달리 봐야 할지?**
  - ✓ 법률상 책임감경 가능성?

# 보안 관련 문제

---

- **본인확인**

- ✓ 의사/환자

- **보안 책임**

- ✓ 진료 시스템 제공사업자의 인증제도(일본)

- **개인정보 및 의무기록의 보호**

# 역외 원격의료

---

- **외국인에 대한 원격의료**

- ✓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(규제샌드박스로 허용): 외국법 상 규제는 별도의 문제

- **외국의료인이 제공하는 원격의료**

- ✓ 면허의 상호인정 여부: 불인정시 무면허의료행위
- ✓ 국가간 협력 필요

**Thank You**